



# 간호행정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일: 2008년 3월  
개정일: 2024년 11월  
개정일: 2026년 4월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칙의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간호행정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구성)

본 위원회는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15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3조 (위원장)

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간호행정학회의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## 제4조 (활동)

1. 위원회는 간호행정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한국간호행정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1)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
  - (1) 편집에 관한 사항
  - (2)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의결
  - (3) 논문 게재료의 결정
- 2) 출판윤리 위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실행이사회 상정
- 3)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의결

2. 논문 심사위원을 공천(추천 및 추천사유) 한다.

3. 편집위원은 매년 1회이상 편집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의결)

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'가'로 의결한다.

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